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39 발의연월일: 2020. 10. 15.

발 의 자:신정훈·김승원·송갑석

황운하 • 홍기원 • 김주영

민병덕 • 허종식 • 박성준

김영주 · 김상희 · 김경만

이수진 · 한준호 의원

(14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, 광주, 인천, 부산,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·운영하고 있음.

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미중분쟁,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,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'신산업 전진기지'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체계적,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, 첨단·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

을 확대하며,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3조의4 신설, 제6조, 제7조의4, 제7조의6, 제7조의7 신설, 제9조의7, 제16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4 신설)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"첨단기술 및 첨단제품"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.
- 8. "핵심전략산업"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여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

- 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- 3.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
- 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- 5.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사항
- 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13호 중 "외국인투자기업에"를 "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 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" 로, "사항"을 "사항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입주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.

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"을 "구청장은"으로 한다.

제7조의6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.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7(핵심전략산업의 선정)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 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·고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 - 2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 - 3.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 - 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지역 특화산업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7제2항 중 "외국인투자의 유치 등"을 "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 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국내 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 도권정비계획법 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" 로, "감면, 의료시설"을 "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외국 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 자기업"을 "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"으 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 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 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개발사업시행자, 입주국내복귀 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"을 "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(제3호·제4 호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 다)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 세기본법 :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

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를 "입주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 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입주외국인투자기업
- 2. 입주국내복귀기업
- 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- 4.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다만,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유 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로 한다.
- 3. 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

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"제27조"를 "제3조의4·제27조"로 한다.

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로하고,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- 2.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- 3.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
- 4.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, 규제자유특 구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
- 5.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경제자유구역의 산·학·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 에 관한 사항
- 7.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8. 핵심전략산업의 신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7. "첨단기술 및 첨단제품"이란		
	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		
	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		
	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		
	및 제품을 말한다.		
<u><신 설></u>	8. "핵심전략산업"이란 경제자		
	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		
	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		
	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		
	된 산업을 말한다.		
<u> <신 설></u>	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		
	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		
	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		
	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		
	구역발전계획(이하 "발전계획"		
	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		
	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		
	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		
	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		
	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	

-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
 관한 사항
- 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사항
- 3.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
- 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- 5.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
- 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 ① 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 -----
 - _____

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다.

- 1. ~ 12. (생략)
- 13. <u>외국인투자기업에</u> 대한 전 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<u>사항</u> <<u>단서 신설></u>

14. ~ 16. (생 략) ② (생 략)

제7조의4(경제자유구역 연접 지 적 역의 협의)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<u>구청장(자치구의 구청</u> <u>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</u>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1. ~ 3. (생 략)

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저 계획의 변경)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·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귀
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
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
<u>자 기업에</u>
<u>사항.</u> 다만, 「수
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입주
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
한다.
14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세7조의4(경제자유구역 연접 지
역의 협의)
<u>구청장은</u>
·.
1. ~ 3. (현행과 같음)
세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
계획의 변경) ①

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이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·변경·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.

1. ~ 10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략)<신설>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11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8 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.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 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.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7(핵심전략산업의 선정)
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·고시할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- 2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- 3.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- 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| 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 ① (생 략)
 -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 도의 준수, 사용의무기간의 준 수,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,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 로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- ③ (생략)
- 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(생 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 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 료 감면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연 구시설·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

- 등)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외국인투 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 자기업,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 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 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 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-----

-----. 다만, 「수도권정 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국내복귀기업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 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.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(현 행과 같음)
 - ② -----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 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 외한다)에 대<u>하여</u>-----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

수 있다.

<신 설> <신 설> <신 설>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 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 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유·공유재산의 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 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. <단서 신

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고,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 귀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-----1.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. 입주국내복귀기업 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 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 업 4.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 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(현행과 같음) -----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 권정비계획법 .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----------. <후단 삭제> 다만, 입 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 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

다.

<u>설></u> 1. · 2. (생 략) <신 설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 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 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,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 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다만, 국유·공 유재산을 「국세기본법」 제2 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에 따른 국유·공유재
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
유·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
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
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<u>⑥</u>
<u>제2항 각 호의 어느</u>
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개발
사업시행자(제3호·제4호의 경우
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
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-
· 이즈이구이트고기어이 겨스 디
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
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
한다.

<u>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제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저기구) ① 시·도지사는 제27조· 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.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.

②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.·2. (현행과 같음) 3. 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 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①제3조의 4·제27조			
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①제3조의 4·제27조	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
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 할 것 #1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①제3조의 4·제27조		3. 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	본
할 것 #1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①제3조의 4·제27조		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	특
1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①		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이	-니
기구) ① <u>제3조의</u> 4·제27조		<u>할 것</u>	
4·제27조	1]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	성
		기구) ① <u>제3조</u>	:의
		<u>4·제27조</u>	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세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			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세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			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세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			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세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			
세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 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		
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 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1] 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징	- 의
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		
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		
\cdot			_

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

2.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

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한 사항

- 3.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 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
- 4.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, 규 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지 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
- 5.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경제자유구역의 산·학·연 공 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- 7.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 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 한 사항
- 8. 핵심전략산업의 신청 및 투 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
- 제27조의5(임용권의 위임 등) (현 행 제27조의4와 같음)
- 제27조의5(공무원 파견기간) (생 제27조의6(공무원 파견기간) (현 행 제27조의5와 같음)
 - 계와 재정) (현행 제27조의6과
- 제27조의4(임용권의 위임 등) (생 략)
- 략)
- 제27조의6(경제자유구역청의 회 제27조의7(경제자유구역청의 회 계와 재정)(생략)